

개 물림 사고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고를 낸 반려견의 안락사 문제

법학부 20230709 조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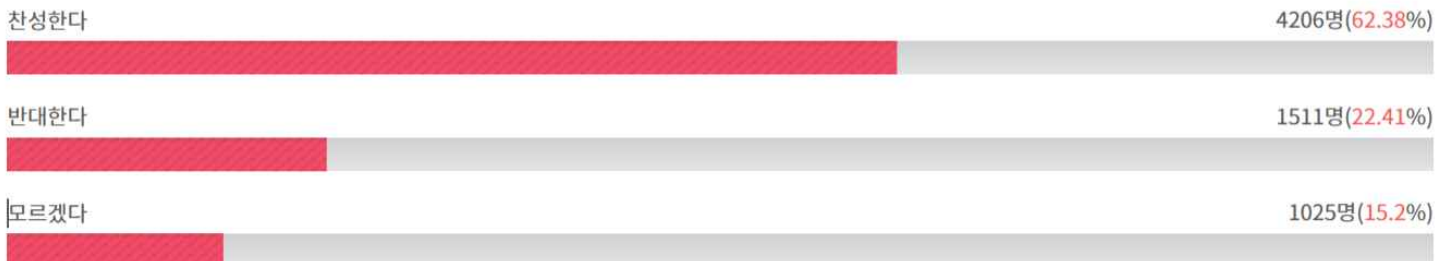
주제문: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은 반려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려견을 안락사시켜서는 안 된다.

1. 서론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진도 믹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8살 아이를 문 사고가 발생했다.¹⁾ 아이가 사고견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고견에게 물려 넘어지자 사고견은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의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고,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고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겨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에 대한 논쟁이 거세졌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견 안락사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사고 이후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742명 중 4206명(62.38%)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²⁾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1511명으로 22.41%에 그쳤다.

4 [필수] 귀하께서는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프1.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³⁾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고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견주의 관리 부실처럼 반려견에게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 물림 사고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견주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반

1) 김윤호(2023.5.31.), 「8살 습격한 개, 살처분 면했다…法 "벌금 500만원, 사고견 몰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597>(검색일: 2023.6.2.).

2) 농림축산식품부(2022.8.12.),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nep/thk/qstnr/qstnrThinkBoxResultPage.npaid>(검색일: 2023.6.3.).

3) 위와 같음.

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이 있는데도 사고건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견주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지 고안해보겠다.

2. 개 물림 사고의 현황과 처리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를 당해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가 매년 2천 명 이상이다.⁴⁾ 즉, 하루에 6명꼴로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것이다. 소방청 보도자료에서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40대부터 70대까지를 대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⁵⁾

연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2,114	125	109	146	146	214	213	232	252	197	201	160	119
2019	2,154	126	135	174	215	248	265	227	202	163	152	132	115
2018	2,368	127	125	204	203	233	246	262	230	211	190	167	170
2017	2,405	139	115	182	207	250	232	245	228	224	229	205	149
2016	2,111	116	122	138	180	216	207	219	224	232	185	140	132

표1.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현황(월별)⁶⁾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견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로서 물건에 해당한다.⁷⁾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상당함을 고려하여 2021년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더 이상 법적인 물건으로 보지 않고 동물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⁸⁾ 따라서 자신이 기르

4) 정민규(2021.8.4.), 「개물림 119구급이송 현황」, 소방청 공개정보, 1쪽.

5) 광희창(2019.2.13.),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구급대 출동」, 소방청 보도자료, 1쪽.

6) 정민규(2021), 앞의 자료, 1쪽.

7) 법제처 편(2022.12.13.), 「민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98조\(검색일: 2023.6.4.\)](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98조(검색일: 2023.6.4.)).

8) 함영훈(2023.5.2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NGO 출범..법안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9000102\(검색일: 2023.6.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9000102(검색일: 2023.6.4.)).

던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곧 자신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견주는 크게 세 가지의 법적 측면에서 책임을 진다.

첫 번째는 형사상 책임이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견주는 형법 제266조⁹⁾의 과실치상죄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형법 제267조¹⁰⁾의 과실치사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과실치상죄는 형량이 크지 않다. 징역형이 없고, 벌금도 500만 원 이하의 정도이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며,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치사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¹¹⁾ 개 물림 사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형법 조문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에서도 사고견의 견주를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¹²⁾에서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다치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¹³⁾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맹견 5종에 속하지 않는 개의 경우에는 견주는 사고견에게 사고 당시 목줄만 하게 했더라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만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과해진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맹견에 대한 제한적인 관리 의무 부과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민사상 책임이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9조가 적용된다.¹⁴⁾ 민법 제750조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¹⁵⁾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보관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¹⁶⁾ 즉, 민법은 동물을 위험 물건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소유자가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의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질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행정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2조¹⁷⁾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신체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에도 국가

9) 법제처 편(1996.7.1.), 「형법」 제2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6조\(검색일: 2023.6.6.\)](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6조(검색일: 2023.6.6.)).

10) 법제처 편(1996.7.1.), 「형법」 제2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ufgy62\(검색일: 2023.6.6.\)](https://url.kr/ufgy62(검색일: 2023.6.6.)).

11) 법제처 편(2021.12.9.), 「형법」 제2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8조\(검색일: 2023.6.7.\)](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8조(검색일: 2023.6.7.)).

12)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16조\(검색일: 2023.6.9.\)](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16조(검색일: 2023.6.9.)).

13)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97조\(검색일: 2023.6.9.\)](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97조(검색일: 2023.6.9.)).

14) 법제처 편(2014.12.30.), 「민법」 제7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9조\(검색일: 2023.6.10.\)](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9조(검색일: 2023.6.10.)).

15) 법제처 편(1960.1.1.),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0조\(검색일: 2023.6.10.\)](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0조(검색일: 2023.6.10.)).

16) 함태성(2023),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4쪽.

17) 법제처 편(2008.3.14.),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20171031,14964,20171031\)/제2조\(검색일: 2023.6.10.\)](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20171031,14964,20171031)/제2조(검색일: 2023.6.10.)).

나 지자체가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는 사고건의 안락사를 포함하여 사고건의 처리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법률은 없다. 따라서 사고건에게 내려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사고건 견주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고건은 견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제 출몰의 형태로 영치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사고건을 압수하지 않아도 수사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건을 압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3. 개 물림 사고의 원인

개 물림 사고는 견주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믿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킨다거나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견주가 사고건은 순둥이라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었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2019년 4월 부산에서 일어난 개 물림 사고 사례에서는 견주가 대형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⁹⁾ 견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개 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동락 부산경상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개는 언제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견주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²⁰⁾ 또,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조절하기만 해도 개 물림 사고의 90%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²¹⁾

견주가 개가 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지나가던 행인이 개를 만지려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다. 2022년 8월 부천에서 일어난 개 물림 사고가 대표적이다.²²⁾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목줄을 하고 주인과 함께 서 있던 진돗개를 보고 예쁘고 잘생겼다며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고, 견주는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성은 진돗개를 만지려고 다가갔고, 결국 개에게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물린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앞서 언급한 소방청 보도자료에서는 견주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개에게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²³⁾

이처럼 견주나 물린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계속해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또, 사고건을 안락사시키는 방법은

18) 법제처 편(2012.1.1.), 「형사소송법」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20910.18862.20220509\)/제106조\(검색일: 2023.6.6.\)](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20910.18862.20220509)/제106조(검색일: 2023.6.6.)).

19) 차근호(2019.4.12.),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확' CCTV속 부산 개물림 사고 모습」, 연합뉴스, [http://www.yna.co.kr/view/AKR20190412105500051?input=1195m\(검색일: 2023.6.10.\)](http://www.yna.co.kr/view/AKR20190412105500051?input=1195m(검색일: 2023.6.10.)).

20) 신승민(2022.7.20.), 「울산 초등생 '개 물림 사고' 충격... "안 무슨 개? 따로 없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3353\(검색일: 2023.6.10.\)](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3353(검색일: 2023.6.10.)).

21) 정채영(2021.10.29.), 「"우리 개는 안 물어요!" ② "개가 아니라 개주인이 문제...단속 인력도 부족"」,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5896/?sc=Naver\(검색일: 2023.6.10.\)](https://www.dailian.co.kr/news/view/995896/?sc=Naver(검색일: 2023.6.10.)).

22) 이보희(2022.8.17.), 「"만져도 돼요?" 물어봤는데...진돗개 물린 여성, 견주 고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7500174&wlog_tag3=naver\(검색일: 2023.6.11.\)](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7500174&wlog_tag3=naver(검색일: 2023.6.11.)).

23) 곽희창(2019), 앞의 자료, 2쪽.

응보 차원의 제재에 불과할 뿐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견주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포함하여 개 물림 사고의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4. 개 물림 사고의 처리와 예방에 대한 제도적 보완

먼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와 사고견의 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이때 개에게 물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견주에게 가해질 제재의 수위와 사고견에 대한 조치 수준을 구분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견주에게 안전 교육을 받게 한다면, 사고견과 외출 시 사고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시키도록 한다면, 사고견에게 훈련 및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특정 종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하는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개의 종과 그와의 잡종견을 의미한다.²⁴⁾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 물림 사고는 맹견으로 지정된 몇몇 견종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이외의 개도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견종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기준으로 맹견을 지정하여 맹견의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 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해져야 한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시험을 치러 합격하고 반려견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견주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한다.²⁵⁾ 우리도 이와 같이 반려견 입양 전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견주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면 개 물림 사고의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견의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는 견주의 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개 물림 사고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응보 차원의 제재에 불과할 뿐이다.

현행법상 사고견은 견주의 물건으로 처리되어 견주는 형법, 동물보호법, 민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이 없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형법, 행정법의 경우 견주에게 적용되는 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에 견주가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만

24)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20230427,00584,20230427\)/제2조\(검색일: 2023.6.11.\)](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20230427,00584,20230427)/제2조(검색일: 2023.6.11.)).

25) 홍완식(2017),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0권 제25호, 유럽헌법학회, 534~535쪽.

착용시켰다면 동물보호법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게다가 사고건의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실질적으로 없어 사고건에게 내려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견주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와 사고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5개의 종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일반 반려견에 비해 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맹견을 지정할 때 견종이 아닌 공격성, 위험성 등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맹견으로 지정되는 개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또, 개 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해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시험을 치른 후 반려견을 입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려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주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개 물림 사고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회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희창(2019.2.13.),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구급대 출동」, 소방청 보도자료.
- 김윤호(2023.5.31.), 「8살 습격한 개, 살처분 면했다…法 "벌금 500만원, 사고견 몰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597>(검색일: 2023.6.2.).
- 농림축산식품부(2022.8.12.),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nep/thk/qstnr/qstnrThinkBoxResultPage.npaid>(검색일: 2023.6.3.).
- 법제처 편(2022.12.13.), 「민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98조)(검색일: 2023.6.4.).
- 법제처 편(1996.7.1.), 「형법」 제2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6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6조)(검색일: 2023.6.6.).
- 법제처 편(1996.7.1.), 「형법」 제2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ufgy62>(검색일: 2023.6.6.).
- 법제처 편(2021.12.9.), 「형법」 제2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8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68조)(검색일: 2023.6.7.).
-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16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16조)(검색일: 2023.6.9.).
-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97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230427,18853,20220426)/제97조)(검색일: 2023.6.9.).
- 법제처 편(2014.12.30.), 「민법」 제7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9조)(검색일: 2023.6.10.).
- 법제처 편(1960.1.1.),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21213,19069,20221213)/제750조)(검색일: 2023.6.10.).
- 법제처 편(2008.3.14.),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20171031,14964,20171031\)/제2조](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20171031,14964,20171031)/제2조)(검색일: 2023.6.10.).
- 법제처 편(2012.1.1.), 「형사소송법」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20910,18862,20220509\)/제106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20910,18862,20220509)/제106조)(검색일: 2023.6.6.).
- 법제처 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20230427,00584,20230427\)/제2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20230427,00584,20230427)/제2조)(검색일: 2023.6.11.).
- 신승민(2022.7.20.), 「울산 초등생 ‘개 물림 사고’ 충격…“안 무는 개? 따로 없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3353>(검색일: 2023.6.10.).
- 이보희(2022.8.17.), 「“만져도 돼요?” 물어봤는데…진돗개 물린 여성, 견주 고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7500174&wlog_tag3=naver(검색일: 2023.6.11.).

정민규(2021.8.4.), 「개물림 119구급이송 현황」, 소방청 공개정보.
정채영(2021.10.29.), 「["우리 개는 안 물어요!" ②] "개가 아니라 개주인이 문제…단속 인력도 부족"」,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5896/?sc=Naver>(검색일: 2023.6.10.).
차근호(2019.4.12.),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확' CCTV속 부산 개물림 사고 모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105500051?input=1195m>(검색일: 2023.6.10.).
함영훈(2023.5.2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NGO 출범..법안 통과 촉구」,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9000102>(검색일: 2023.6.4.).
함태성(2023),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홍완식(2017),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0권 제25호, 유럽헌법학회.